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
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국가보훈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(법률 제18235호, 2021. 6. 8. 공포, 2021. 12. 9. 시행)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맞게 본 시행령의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대한민국6·25참전유공자회(이하 “6·25참전유공자회”라 한다)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(이하 “월남전참전자회”라 한다)의 국·공유 재산 처분 관련 보고 사항(안 제12조의3)

법 제28조제4항(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서 대통령령으로 6·25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참전자회의 국·공유 재산 처분 관련 보고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·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등 국·공유 재산 처분 관련 보고 사항을 규정함

나. 권한 위임 사항 정비(안 제18조제1항제9호의2 및 제15호)

법 제42조(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권한 위임 사항(보고

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권, 과태료의 부과·징수권) 역시 정비하는
것임

다.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(안 제21조 및 별표 3)

법 제42조(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과
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게 과태료 부과대상을 추가하
고 별표 3을 신설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것임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0000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3(국·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) 법 제28조제4항(법 제18조의2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.

1.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
2. 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
3. 법 제28조제1항(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매입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(이하 “매입재산”이라 한다)의 처분 후 사용용도
4. 매입재산의 처분에 관한 법적 분쟁
5. 매입재산의 현황 및 상태

제18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9의2. 법 제32조(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

다른 보고나 자료 등의 제출 요구(지방보훈청장,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)

15. 법 제42조(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(지방보훈청장,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)

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1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(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1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가.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나.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

다.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가. 법 제24조의3제1항(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수익사업을 한 경우	법 제42조제1항제1호 (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	500만원
나. 법 제24조의3제2항(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42조제1항제2호 (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	500만원
다. 법 제24조의9제1항(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·기피한 경우	법 제42조제1항제3호 (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	500만원
라. 법 제24조의10제1항(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·기피한 경우	법 제42조제1항제4호 (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	500만원
마. 법 제28조제4항(법 제18조의2제4항에	법 제42조제1항제5호	500만원

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	(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	
바. 법 제31조제1항(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조사·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·기피한 경우	법 제42조제1항제6호 (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	500만원
사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(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	법 제42조제2항제1호 (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	300만원
아. 법 제32조의2(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재무·회계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2조제1항제7호 (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	500만원
자. 법 제34조(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6·25참전유공자회·월남전참전자회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42조제2항제2호 (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	300만원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제12조의3(국·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) 법 제28조제4항(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. 1.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2. 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3. 법 제28조제1항(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매입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(이하 “매입재산”이라 한다)의 처분 후 사용용도 4. 매입재산의 처분에 관한 법적 분쟁 5. 매입재산의 현황 및 상태
제18조(권한의 위임)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(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	제18조(권한의 위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주특별자치도지사(말한다)에
게 위임한다. 다만, 제주특별자
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
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
권한 중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
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
특별법」 제344조에 따라 제주
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
한은 제외한다.

1. ~ 9. (생략)

<신설>

10. ~ 14. (생략)

15.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
부과·징수

-----.

-----.

1. ~ 9. (현행과 같음)

9의2. 법 제32조(법 제18조의2
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
포함한다)에 따른 보고나 자
료 등의 제출 요구(지방보훈
청장,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
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권
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하
다)

10. ~ 14. (현행과 같음)

15. 법 제42조(법 제18조의2제4
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
한다)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
· 징수(지방보훈청장, 보훈지
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
사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
사항으로 한정한다)

② (생략)

제21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① 법

제34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2.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3.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
4.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1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

42조제1항 및 제2항(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가보훈처 보훈단체협력담당관	
연 락 처	(044) 202 - 5493